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19호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1항제1호를 위반한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를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태백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2차)
2. 공고기간: 2021. 4. 9. ~ 4. 22.(14일간)
3. 문 의 처: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33-550-0025)
4. 공시송달 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가. 태백산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불법시설물로서 2020년 12월~2021년 4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를 공시송달로 교부하고 시설물에도 부착하여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4월 22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2차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2차)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2021. 4. 9.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첨부]

행정대집행 계고(2차)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구분	소 재 지		지목	용도지구	시설물 현황			점유자	비 고
	시·동	지번			주용도	동수	면적 (㎡)		
1	태백시 혈동	산87-2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11.6	미상	1개소